

# 제 권 판 결

사건번호	신청인·주소	증서의 표시
2005카공 351	주식회사 동양기어 (1942110032491) : 창원시 웅남동 44-2 대표이사 박명규	① 약속어음 번호: 03545652 금액·발행일·지급일: 공란 발행인: 예화공업(주) ② 약속어음 번호: 7615454, 9166450, 9166451, 9166453, 9166460, 9166472, 9166473, 9166474, 9167625, 9167631, 9167633, 9167639, 9167647, 9167648, 9167649, 9167650, 9316883, 9316892, 9317886, 9317889, 9317891, 9317894, 9317903, 9317904, 9317906, 9317907, 9317909, 9317916, 9317918, 9318871, 9318880, 9318882, 9318883, 9318894, 9318896, 9318897, 9318902, 9318905, 9318908, 9318910, 2377379, 5055994, 10009514, 10617560, 12401896, 13485007, 1989214, 13327140 담좌수표 번호: 4 217695 (49대) 금액·발행일: 백지 발행인: 주식회사 동양기 어 지급지및지급장소: 신한은행 창원기업금융지점 최종소지 인: 주식회사 동양기어

판결선고 2005. 12. 26.

주 문

위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위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5. 9. 9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  
한 2005. 12. 26. 10: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  
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6년 3월 일

창원지방법원 판사 홍 지 영